

□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특례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* *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27 인용	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특례 삭제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삭제(인용조문 일몰)

□ 개정 내용

- 고배당기업* 주식의 배당소득(9%)에 대해 일반 배당소득(14%)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세 특례가 '17년 종료됨에 따라,
 - * 이익의 상당 부분(30% 이상)을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주권상장법인
 - 「지방세법」상 해당 특례 인용 규정 삭제(제93조제2항제1·2호)

□ 적용 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
 ※ 인용조문을 단순 정비한 사항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

■ 지방세법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